

(우)04427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3층 [http://www.kma.org] / 전화(02)6350-6609/ 전송(02)793-8702
의무법제국 국장 김상구[6573] 법무팀장 김철욱[6683] 팀원 한민지[6609]/ E-mail : minzii.han@gmail.com

문서번호 대의협 제 711-14073호

시행일자 2024. 02. 01.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응급의학과 전공의 실형 판결 관련 (특별)사면 청원서 연명부 제출을 위한
협조요청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대법원은 서울 모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던 환자에게 대동맥박리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였던 해당 의사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3. 하지만 이는 열악한 응급의료 환경에서 수련 및 임상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며, 이와 같은 판결의 결과 의사들이 위험 환자 및 위험 진료과목을 기피하고 소극적으로 방어 진료를 하는 현상을 야기하는 등 필수의료의 붕괴를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4. 이에 우리 협회는 무너져가는 필수医료를 살리고, 의료인들의 법적 안전성을 위해 전국 의사회원들에게 이번 판결의 심각성과 부당성을 알리고, 해당 응급의학과 의사의 억울한 사정을 일부나마 해소하고자 불임과 같이 전체 의료계를 대상으로 (특별)사면 청원서 연명부를 받아 관계 기관에 특별사면을 청원할 예정입니다.

5. 이에 우리협회는 귀 회의 연명부 서명 참여를 요청드리오니, 귀회에서는 소속회원들에게 연명부 서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특별)사면 청원서 연명부 서명용지 제출 요청

나. 회신기한 : 2024. 02. 16.(금) 까지

다. 회신처 : 대한의사협회 의무법제국 법무팀 팀원 한민지

(E-mail : minzii.han@gmail.com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대한의사협회 3층)

붙임 :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한 징역형 판결 관련 (특별)사면 청원서 연명부 1부. 끝.

대한 의 사 협 회 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수신처 : 16개 시도지사회장, 대한의학회장(26개 전문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각과개
원의협의회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대한공중보건이사협의회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